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the Awareness for the Privacy of the Users at the School Libraries

심재윤 (Jae-yun Sim)**

노영희 (Younghee Noh)***

초 록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제기하여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생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선행연구, 국내외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국내외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유형 조사와 학생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의 인식,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다. 둘째,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느끼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41.6%의 응답자들은 '심각하다'고 하였고, 18.4%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였다. 셋째, 제 3자가 도서관 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8.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10.4%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넷째,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awarenesses of librarians of issues regarding the privacy of the users of school libraries. It sought to determine if, by raising the issue of the importance of the need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the school libraries, and the implications of not paying attention to the rules in effect, the awareness regarding the privacy of the users of school libraries would be improved. For this,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the privacy of the students, the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the domestic and foreign students, and the types of the infringements upon the protection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A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awareness of issues related to the privacy of the users of the library. The research showe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awarenesses regarding the privacy of the users of the school libraries appeared low, and low recognition was also found regarding the awareness of the cases of the infringements upon the privacy of the users of the school libraries: regarding the awarenes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privacy; regarding the seriousness of the privacy problems of the users; and regarding the factors that can encroach upon the privacy of the users. Second, regarding the seriousness felt when the library records of the users of the school libraries are leaked to the outside, 41.6% of the respondents responded by saying "It is serious", and 18.4% responded by saying "It is not serious". Thir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awareness regarding whether the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is needed in case a third party requests access to reading the records in the library, 68.5% of the respondent responded "It is needed", and only 10.4% responded "It is not needed". Last, in the investigation into whether the respondents had the experience of being educated as to the rules related to the privacy of the users at a school or an external organization, over 8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did not receive it.

키워드: 학교도서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학생

School libraries, Privacy, Student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을 축약·발전시킨 논문임.

** 제천기적의도서관 사서(morden0976@gmail.com)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5년 11월 16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12월 14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 31-63,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4.031]

1. 서론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이나 통신사,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큰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그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인정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주민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헤럴드경제 뉴스 2014).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3년 8월 6일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2조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한 경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각 관공서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면서, 본인 인증방법을 공공아이핀이나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대체하였다.

도서관 현장에서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통지(2005.3.2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2005.4.)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공표하였다. 이로 인해 도서관도 회원증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고, 회원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이 표기되지 않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는 사회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는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학교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은 대출증을 발급할 때 공공도서관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학적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한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나이스'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나이스'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를 연결하여 선진교육행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종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장순선, 이옥화 2010).

교육부는 학교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2006년 3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전국 44개 나이스 시범학교의 학부모 2,842명을 대상으로 '내 자녀 바로 알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바가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06년 9월부터 전국의 학부모에게 본 서비스가 확대·시행되었다(장순선, 이옥화 2010). 또한 학교도서관에서는 나이스에서 지원하는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사서와 교사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생들의 독후활동과 학생들의 책 대출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4월 7일 국가위원회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자, 인터넷 토론방과 게시판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포털사이트에서 즉석투표를 한 결과, 총 1만 386명의 투표자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지한 사람들은 50.7%로 나타났고,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한다'를 지지한 사람들은 46.6%로 나타났다(한겨레 2005).

인권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케 하고 이를 평가하면 아동은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하여 자유로운 사적활동을 방해받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힌 바가 있다. 또한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해 아동의 양심 형성에 교사 등이 관여할 우려가 크며 아동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 등 내면의 내용이 검사·평가 될 것이라는 불안함 때문에 솔직히 서술할 수 없다고도 지적하였다(연합뉴스 2005).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프라이버시 유출 가능성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사서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인식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 연구

최근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가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학생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학생은 미성년자로서 기본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개하기 싫은 정보도 부모나 교사에게 공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부모나 교사에 의한 학생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학생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미성숙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고, 그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사서, 교사, 학생은 학생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학생 프라이버시관련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연구를 조사했으며, 서경환(1990)은 학생의 권리로 학생의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생의 평등권, 적법절차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한국과 미국의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장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고전(1999)

은 학교 규범 내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관련된 법의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 학교 폭력과 체벌이라는 쟁점에 관한 현행 법규를 분석하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수광(2000)은 학생의 인권으로는 크게 교육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호 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적법절차 등을 보장 받을 권리로 구분하여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와 교사들의 논리를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고, 학생들의 인권과 삶의 모습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정형승(2004)은 학생의 권리를 학습권, 적법절차,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였고, 한국과 일본, 미국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권리 사례 분석을 통해 나라마다 학생들이 가지는 기본권 보장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과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헌을 조사해 보았을 때, 국내의 경우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관련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국외의 경우에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Hildebrand(1991)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장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법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Minkel(2002)은 어린이들의 지문스캔에 의해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영국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의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전자지문의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Minkel(2004)은 부모가 자녀의 도서관 이용기록을 볼 수 있게 알래스

카 의회에 제안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제안된 법률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 법안의 통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Riehl(2006)는 캐나다의 교육시스템이 학생, 교사, 사서와 학교 관리자들을 포함하는 도서관 프라이버시에 대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보호와 지적자유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Adams(2011)는 학교도서관과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법·제도적 측면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 사서는 학생 프라이버시의 안전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후 Adams(2014)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권리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의 경우에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국외의 경우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의 중요성과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조사나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2 학생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

2.2.1 학생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

학생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국내법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

법」 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장 총칙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전연령의 모든 국민들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있어 모든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법이다. 학생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항 학생정보의 보호원칙에서 <표 1>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즉 이 법은 학생정보를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항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다. 학생개인정보 제공의 제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으로 「초·중등교

육법」 제30조의6항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에서 <표 2>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항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학생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미국법에는 대표적으로 「가족교육권과프라이버시법」과 「버몬트도서관 기록법」이 있다. 미국의 「가족교육권과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1974)」은 학생들의 정보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연방기금을 수여받지 못하게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시하고, 이에 대한 감독권을 교육부에 부과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조규범 2005). 「가족교육권과 프라이버시법」에 따르면, 학생 또는 학부모는 교육기관이 보유한 자신 또는 아동 교육정보에 대하여 조사·심사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의 공개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교육기관은 '교육기록 내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학부모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학교가 유지·관리하되 교육정보에 대해서는 자격 있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한국전산원 2004).

또한 미국 버몬트주의 버몬트도서관에는 「버몬트도서관 기록법」이 있다. 이 법은 2007년 12월 상원의원 클레어 에어(Claire Ayer)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는 공공도서관과 학술기관 도서관에서의 도서관 이용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도서관 이용자 기록의 비밀보장”이라는 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하였다. 원래 이 법에는 학교도서관 기록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버몬트주 학교도서관협회에서 학교도서관 기록이라는 표현을 추가적으로 넣어줄 것을 요청하여 추가되었다(Helen R. 2013).

2.2.2 도서관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법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도서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2006년에 신설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련 항목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위와 같이 국내외 학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제공, 이용, 안전한 관리 등과 관련한 법적 장치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동의 없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법」에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제공, 이용, 관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장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2.3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실태와 문제점

2.3.1 학생 개인정보의 관리 필요성 및 관리 범위

학생들의 올바른 지도와 관리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정보들이 학교에 의해 수집되고 있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학생들 개개인

의 개인정보들을 비교적 많이 저장하고 있는 곳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를 연결하여 선진 교육행정 정보서비스를 위해 2002년부터 나이스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장순선, 이옥화 2010). 이와 같이 학생들의 정보가 전산화되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신중하게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입력된다면, 학생들의 취업이나 진학에 불합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정보가 포함되는 대표적인 자료는 학교생활기록이다. 학교생활기록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 상황을 기록하여 50년간 보존하는 문서를 말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현재 생활기록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행정정보화를 위해서 도입한 나이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관리된다.

교육부에서 발행한 2013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에는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입학 당시의 주소,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사항 등이 포함되어 입력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상자료에서 학교정보, 학생

의 수상경력,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생(중학생과 고등학생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수 중에 있는 학생만 해당한다)의 독서활동상황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나 교육기관의 학생정보 수집 범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2011년 3월 29일에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와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근거하고 있다(〈표 3〉, 〈표 4〉 참조).

미국의 경우에 「가족교육권리와 사생활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 and Privacy Act: FERPA)」에서 학교에서 수집할 수 있는 학생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출생일, 출생지, 부모나 후견인의 주소, 비상시 접촉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장소, 등급, 시험 성적, 수강한 과목, 학과 전공 및 활동상황, 징계기록, 재학했던 학교, 수상경력, 취득학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승희 2001).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학생 프라이버시 정보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독서활동상황,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대출반납정보, 로그인 기록, 연체 기록, 열람 도서목록, 예약자료목록 기록, 희망도서신청 기록, 독서 토론방 기록, 책 추천 서비스 기록, 도서관 데이터 기록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표 3〉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표 4〉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의 경우에는 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교도서관 가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논의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3.2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실태와 문제점

2010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전자도서관시스템과 연계한 독서활동관리프로그램으로서 학생은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기록을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남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서활동기록 방식은 그동안 부산시 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서만 활용되어 왔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12년간의 독서기록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하여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학생 개인의 지적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일기를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미국의 경우 “Board of Education v. Pico, 457 U.S. 853” 판례가 있다. 이 판례의 경우 학부모 및 교직원위원회의 항소를 폐소시켰다. 교육탄원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한 ‘반미주의, 반기독교적, 반유대적, 교육적이지 않은 성향’의 책들을 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선언 판결과 금지명령구제를 위해 교육탄원위원회와 그 멤버들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학생들의 주장에 따라 해당도서들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린 재판이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진정한 지적자유를 누리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도서관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자원을 활용하며, 자유로운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3.1 데이터 수집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현황을 파악

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 사서, 학생들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 중·고등학교를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나 어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외하였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중에서 학교도서관이 있는 중·고등학교 전체 207곳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강화군이나 웅진군에 속하거나 주로 섬 지역이어서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20곳(중·고등학교 각각 10곳)은 제외하고 총 187개의 중·고등학교가 설문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허가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서 설문 대상기관은 출입허가를 받은 30개로 축소되었으며, 방문을 거절한 학교의 경우, 교문으로 나오는 학생들을 만나서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에 응답하겠다고 한 학생들에 한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총 32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27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100%). 설문은 4월 28일부터 5월 25일까지 4주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1을 사용하였고,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교차분석을 위해 Anova분석을 하였다.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분 석기법을 사용하였다.

3.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노영희(2014) 연구자가 ‘도서관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가이드라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 항목과 ‘독서

〈표 5〉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조사영역	문항내용
개인적인 배경	성별 / 신분 / 연령 / 학년 / 교사 및 사서들의 근무경력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조사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사례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지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어느 정도인지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의 심각성 어느 정도 인지
	도서관 기록에 대해 제 3자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의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도서관 이용 기록들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	도서관 이용기록들의 도서관 보관기간
	회원정보 기록 / 로그인 기록 / 대출반납 기록 / 연체 기록 / 열람도서목록 기록 / 예약자료목록기록 / 자료 변상 기록 / 희망도서신청기록 / 도서관 컴퓨터 이용기록 / 독후 활동 기록 / 독서 토론방 기록 / 포트폴리오 출력 기록 / 나의 문집 및 가족 문집 기록 / 책 추천 서비스 기록 / 도서관 데이터 백업자료 / 도서관 컴퓨터 모니터링과 통제소프트웨어 / 컴퓨터 모니터가 보이는 개방된 공간 / 도서관 외주업체와 개인정보공유 / CCTV 영상 기록 / Q&A 게시판 내 등록된 게시물 기록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교육의 필요성	학교나 외부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학교도서관에서 회원증 발급 시 '개인정보 방침' 관련하여 도서관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았는지

교육지원 업무관리 매뉴얼(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구성은 〈표 5〉와 같다.

설문 문항은 크게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항목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문항이다. 그 가운데 설문응답자의 개인적인 배경을 조사하는 항목은 5개 문항이고,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사생활) 및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항목은 11개 문항이다.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분 및 근무경력에 따라 프라이버시 인식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사용하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분석을 사용하였다. 총 30개의 중·고등학교 설문응답자 327명을 대상으로 성별, 소속, 연령, 근무경력 등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러나 소속된 집단에 따라 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에 대해 조사하였고, 사서나 교사의 경우에는 근무경력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4. 결 과

본 연구에서 데이터의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 21을 사용하였으며 각 설문문항에 대해

4.1 개인적인 배경

학생, 사서, 교사를 모두 포함하는 설문응답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분포는 남자

〈표 6〉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항목		N	%
성별	남	165	50.5
	여	162	49.5
신분	교사	65	19.9
	사서	36	11.0
	학생	226	69.1
연령	중학교	54	16.5
	고등학교	172	52.6
	20대	24	7.3
	30대	41	12.5
	40대	25	7.6
	50대 이상	11	3.4
근무경력	5년 이하	36	11.0
	6-10년	28	8.6
	11-15년	16	4.9
	16-20년	6	1.8
	20년 이상	15	4.6
	결측 값	226	69.1
	합계	101	30.9

165명(50.5%), 여자 162명(49.5%)으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신분을 보았을 때 학생이 226명(69.1%)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65명(19.9%), 사서 36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는 고등학생이 172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54명(16.5%), 30대 41명(12.5%), 40대 25명(7.6%), 20대 24명(7.3%), 50대 이상 11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 분포는 교사와 사서에 해당하는 집단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사서와 교사가 전체 36명(1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6년에서 10년 미만의 경력 28명(8.6%), 11년에서 15년 미만의 경력 16명(4.9%), 20년 이상의 경력 15명(4.6%), 16년에서 20년 미만의 경력 6명(1.8%)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4.2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개인적인 배경사항 중에 신분(사서, 교사, 학생) 및 연령을 기반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 문항으로는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인식,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의 심각성,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4.2.1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먼저,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였으며, 33%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하였고, 27%의 응답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7〉 참조).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신분(사서, 교사, 학생) 및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신분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사서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 3.05, 학생 2.85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인식차

이를 비교하였으며, 40대가 평균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가 3.04, 30대가 3.02, 고등학생이 2.98, 50대가 2.82, 중학생이 2.44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에는 유의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2$).

4.2.2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대해 어느 정도 들어보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75.3%의 이용자들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2.2% 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9〉 참조). 실제로 학교도서관

〈표 7〉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혀 모른다	33	10.1	3.003	1.070
모른다	75	22.9		
보통이다	131	40.1		
잘 알고 있다	62	19.0		
매우 잘 알고 있다	26	8.0		
합계	327	100.0		

〈표 8〉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구분	세부항목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모른다		보통이다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평균	표준편차	p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분	교사	5	7.7	15	23.1	22	33.8	18	27.7	5	7.7	3.05	1.067	0.271
	사서	2	5.6	8	22.2	13	36.1	11	30.6	2	5.6	3.08	0.996	
	학생	26	11.5	52	23.0	96	42.5	33	14.6	19	8.4	2.85	1.075	
연령	중학생	12	22.2	14	25.9	22	40.7	4	7.4	2	3.7	2.44	1.040	0.012
	고등학생	14	8.1	38	22.1	74	43.0	29	16.9	17	9.9	2.98	1.057	
	20대	3	12.5	4	16.7	8	33.3	7	29.2	2	8.3	3.04	1.160	
	30대	1	2.4	12	29.3	15	36.6	11	26.8	2	4.9	3.02	0.935	
	40대	1	4.0	5	20.0	8	32.0	9	36.0	2	8.0	3.24	1.012	
	50대	2	18.2	2	18.2	4	36.4	2	18.2	1	9.1	2.82	1.250	

〈표 9〉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대한 인지도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115	35.2	2.131	0.982
들어본 적이 없다	131	40.1		
보통이다	41	12.5		
들어보았다	35	10.7		
많이 들어보았다	5	1.5		
합계	327	100		

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신분에 따른 인식비교에서 교사가 평균 2.22로 가장 높고, 사서 2.11, 학생 1.97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50대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2.24, 20대와 중학생 2.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0〉 참조).

4.2.3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심이 없다가 46.5%로 나타났으며, 관심이 많다는 12.9%로 낮게 나타났다. 즉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는

〈표 10〉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구분	세부항목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 본 적이 없다		보통이다		들어 보았다		많이 들어보았다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분	교사	13	20.0	34	52.3	10	15.4	7	10.8	1	1.5	2.22	0.944	0.206
	사서	9	25.0	19	52.8	3	8.3	5	13.9	0	0.0	2.11	0.950	
	학생	93	41.2	78	34.5	28	12.4	23	10.2	4	1.8	1.97	1.052	
연령	중학생	16	29.6	23	42.6	8	14.8	6	11.1	1	1.9	2.13	1.029	0.390
	고등학생	77	44.8	55	32.0	20	11.6	17	9.9	3	1.7	1.92	1.056	
	20대	10	41.7	7	29.2	1	4.2	6	25.0	0	0.0	2.13	1.227	
	30대	6	14.6	23	56.1	9	22.0	2	4.9	1	2.4	2.24	0.860	
	40대	4	16.0	17	68.0	2	8.0	2	8.0	0	0.0	2.08	0.759	
	50대	2	18.2	6	54.5	1	9.1	2	18.2	0	0.0	2.27	1.009	

〈표 11〉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혀 관심이 없다	53	16.2	2.875	0.875
관심이 없다	99	30.3		
보통이다	133	40.7		
관심이 많다	33	10.1		
관심이 매우 많다	9	2.8		
합계	327	100.0		

것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신분별 인식차이 비교에서 사서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 2.94, 학생 2.30 순으로 나타났다. *p*값은 0.000으로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30대가 3.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 3.08, 20대 2.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2〉 참조).

4.2.4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49.2%의 응답자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7.6%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를 비교하

〈표 12〉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구분	세부항목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매우 많다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분	교사	4	6.2	11	16.9	37	56.9	11	16.9	2	3.1	2.94	0.846	0.000
	사서	0	0.0	8	22.2	15	41.7	10	27.8	3	8.3	3.22	0.898	
	학생	49	21.7	80	35.4	81	35.8	12	5.3	4	1.8	2.30	0.927	
연령	중학생	11	20.4	20	37.0	19	35.2	4	7.4	0	0.0	2.30	0.882	0.000
	고등학생	38	22.1	60	34.9	62	36.0	8	4.7	4	2.3	2.30	0.944	
	20대	2	8.3	5	20.8	10	41.7	6	25.0	1	4.2	2.96	0.999	
	30대	2	4.9	5	12.2	24	58.5	7	17.1	3	7.3	3.10	0.889	
	40대	0	0.0	5	20.0	13	52.0	7	28.0	0	0.0%	3.08	0.702	
	50대 이상	0	0.0	4	36.4	5	45.5	1	9.1	1	9.1	2.91	0.944	

〈표 13〉 학교도서관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혀 심각하지 않다	59	18.0	2.875	0.875
심각하지 않다	102	31.2		
보통이다	141	43.1		
심각하다	25	7.6		
매우 심각하다	0	0.0		
합계	327	100.0		

였으며, 신분별 인식차이 비교에서 사서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 2.94, 학생 2.30 순으로 나타났다. *p*값은 0.000으로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30대가 3.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 3.08, 20대 2.96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4〉 참조).

4.2.5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요인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48%로 나타났고 많다는 14.7%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사서, 교사, 학생 모두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5〉 참조).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신분에 따른 인식차이를 비교에서 교사가 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서 2.61, 학생 2.41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30대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 2.64, 20대 2.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구분	세부항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분	교사	5	7.7	26	40.0	27	41.5	7	10.8	0	0.0	2.94	0.846	0.000
	사서	6	16.7	13	36.1	13	36.1	4	11.1	0	0.0	3.22	0.898	
	학생	48	21.2	63	27.9	101	44.7	14	6.2	0	0.0	2.30	0.927	
연령	중학생	6	11.1	14	25.9	29	53.7	5	9.3	0	0.0	2.30	0.882	0.000
	고등학생	42	24.4	49	28.5	72	41.9	9	5.2	0	0.0	2.30	0.944	
	20대	7	29.2	6	25.0	8	33.3	3	12.5	0	0.0	2.96	0.999	
	30대	1	2.4	17	41.5	19	46.3	4	9.8	0	0.0	3.10	0.889	
	40대	2	8.0	13	52.0	8	32.0	2	8.0	0	0.0	3.08	0.702	
	50대 이상	1	9.1	3	27.3	5	45.5	2	18.2	0	0.0	2.91	0.944	

〈표 15〉 학교도서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매우 적다	64	19.6	2,589	0,939
적다	93	28.4		
보통이다	122	37.3		
많다	46	14.1		
매우 많다	2	0.6		
합계	327	100.0		

〈표 16〉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요인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구분	세부항목	매우 적다		적다		보통이다		많다		매우 많다		평균	표준편차	유의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분	교사	5	7.7	24	36.9	27	41.5	8	12.3	1	1.5	2.63	0.858	0.194
	사서	7	19.4	11	30.6	7	19.4	11	30.6	0	0.0	2.61	1.128	
	학생	52	23.0	58	25.7	88	38.9	27	11.9	1	0.4	2.41	0.986	
연령	중학생	9	16.7	13	24.1	27	50.0	5	9.3	0	0.0	2.52	0.885	0.476
	고등학생	43	25.0	45	26.2	61	35.5	22	12.8	1	0.6	2.38	1.016	
	20대	6	25.0	5	20.8	6	25.0	6	25.0	1	4.2	2.63	1.245	
	30대	4	9.8	14	34.1	14	34.1	9	22.0	0	0.0	2.68	0.934	
	40대	2	8.0	11	44.0	9	36.0	3	12.0	0	0.0	2.52	0.823	
50대 이상	0	0.0	5	45.5	5	45.5	1	9.1	0	0.0	2.64	0.674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6〉 참조).

4.2.6 학교도서관 이용기록의 보관기간

학교도서관에서 수집한 학교도서관 이용기록의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6개월 정도 보관해야 한다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서비스 후 즉각 폐기가 28.1%로 나타났으며, 약 12개월 정도 보관해야 한다가 22.9%, 영구 보관해야 한다가 6.7%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최대 6개월 정도 보관해야 한다는 66.6%이고, 최대 12개월 정도까지

포함하면 89.5%로 나타났으며, 모든 집단이 보관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에 대한 신분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교사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후 즉각 폐기해야 한다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 12개월 정도 보관해야 한다가 27.7%, 약 6개월 정도 보관해야 한다가 26.2%, 영구 보관해야 한다가 3.1% 순으로 나타났다. 사서의 경우에는 교사와 다르게 약 6개월 정도 보관해야 한다가 약 12개월 정도 보관해야 한다가 각각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종료 후 즉각 폐

〈표 17〉 학교도서관 이용기록의 보관 기간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	비율
서비스 후 즉각 폐기	92	28.1
약 6개월 정도	126	38.5
약 12개월 정도	75	22.9
영구보관	22	6.7
기타	12	3.7
합계	327	100.0

기해야 한다가 19.4%, 영구 보관해야 한다가 2.8%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 보관해야 한다가 42.5%로 나타났고, 서비스 종료 후 즉각 폐기해야 한다가 27.9%로, 약 12개월 정도 보관해야 한다가 19.5%, 영구 보관이 8.4%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기타 의견으로는 재학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회원 등록한 현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 졸업식 날 폐기해야 한

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4.2.7 이용자들의 학교도서관 이용기록의 외부유출에 대한 심각성 인식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성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심각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1.6%로 나타났고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8.4%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표 18〉 학교도서관 이용기록의 보관기간에 대한 신분별 인식차이

구분	세부항목	서비스 종료 후 즉각 폐기		약 6개월 정도 보관		약 12개월 정도 보관		영구보관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분	교사	22	33.8	17	26.2	18	27.7	2	3.1	6	9.2
	사서	7	19.4	13	36.1	13	36.1	1	2.8	2	5.6
	학생	63	27.9	96	42.5	44	19.5	19	8.4	4	1.8

〈표 19〉 이용자들의 학교도서관 이용기록의 외부유출로 인한 심각성 인식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혀 심각하지 않다	13	4.0	3.362	0.910
심각하지 않다	47	14.4		
보통이다	131	40.1		
심각하다	105	32.1		
매우 심각하다	31	9.5		
합계	327	100.0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성 대해 신분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사서가 3.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 3.35, 학생 3.23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40대가 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3.51, 50대 이상 3.27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3.19)보다는 고등학생(3.24)이 유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0〉 참조).

4.2.8 타인의 도서관 이용기록 열람요청 시 본인 동의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기록을 타인이 열람하기를 요청하였을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필요하지 않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0.4%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학생이용자들의 학교도서관 이용기록에 대

해 타인이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집단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신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교사가 평균 4.02로 가장 높게 필요성을 주장했고, 사서 3.97, 학생 3.69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에는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하였을 때 50대 이상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4.10, 20대 3.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고등학생이 3.76으로 중학생 3.46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는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4.2.9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인식차이와 사후검증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을 위해 Anova분석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을 사용하였다. 신분에 따른 차이검증 분석 결과를 보면, 프라이버시 보호 관심정도에서는 F값 24.197의 통계적으

〈표 20〉 학교도서관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느끼는 심각성의 인식차이

구분	세부항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평균	표준편차	p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분	교사	0	0.0	10	15.4	28	43.1	21	32.3	6	9.2	3.35	0.856	0.186
	사서	0	0.0	5	13.9	13	36.1	12	33.3	6	16.7	3.53	0.941	
	학생	13	5.8	32	14.2	90	39.8	72	31.9	19	8.4	3.23	0.989	
연령	중학생	4	7.4	6	11.1	23	42.6	18	33.3	3	5.6	3.19	0.973	0.349
	고등학생	9	5.2	26	15.1	67	39.0	54	31.4	16	9.3	3.24	0.996	
	20대	0	0.0	5	20.8	13	54.2	3	12.5	3	12.5	3.17	0.917	
	30대	0	0.0	5	12.2	14	34.1	18	43.9	4	9.8	3.51	0.840	
	40대	0	0.0	3	12.0	9	36.0	9	36.0	4	16.0	3.56	0.917	
	50대 이상	0	0.0	2	18.2	5	45.5	3	27.3	1	9.1	3.27	0.905	

〈표 21〉 타인의 도서관 이용기록 열람요청 시 본인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혀 필요 없다	11	3.4	3.893	0.887
필요 없다	23	7.0		
보통이다	69	21.1		
필요하다	146	44.6		
매우 필요하다	78	23.9		
합계	327	100.0		

〈표 22〉 도서관 이용기록 열람 요청 시 본인의 동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구분	세부항목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표준편차	p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분	교사	1	1.5	2	3.1	8	12.3	38	58.5	16	24.6	4.02	0.800	0.033
	사서	1	2.8	1	2.8	6	16.7	18	50.0	10	27.8	3.97	0.910	
	학생	9	4.0	20	8.8	55	24.3	90	39.8	52	23.0	3.69	1.046	
연령	중학생	3	5.6	4	7.4	19	35.2	21	38.9	7	13.0	3.46	1.004	0.025
	고등학생	6	3.5	16	9.3	36	20.9	69	40.1	45	26.2	3.76	1.052	
	20대	1	4.2	1	4.2	5	20.8	10	41.7	7	29.2%	3.88	1.035	
	30대	0	0.0	1	2.4	5	12.2	24	58.5	11	26.8	4.10	0.700	
	40대	1	4.0	1	4.0	3	12.0	16	64.0	4	16.0	3.84	0.898	
	50대 이상	0	0.0	0	0.0	1	9.1	6	54.5	4	36.4	4.27	.647	

로 유의미한 수치를 발견하였으며, 사후검증인 Scheffe에서도 세 집단간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관심정도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본인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F값 3.452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인식정도는 F값 2.963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프라이버시 보호관심에

대한 분석에서는 F값 9.222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인 Scheffe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집단과 30대, 40대 집단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프라이버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F값 2.326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본인동위에 대한 분석에서는 F값 2.603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인 Scheffe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표 23〉 참조).

〈표 23〉 개인적인 배경에 따른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인식차이 검증

문항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표준편차	F	p	Scheffe
프라이버시 인식정도	신분	교사	65	3.05	1.067	1.312	0.271	
		사서	36	3.08	0.996			
		학생	226	2.85	1.075			

문항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표준편차	F	p	Scheffe	
프라이버시 인식정도	연령	중학생	54	2.44	1.040	2.963	0.012	-	
		고등학생	172	2.98	1.057				
		20대	24	3.04	1.160				
		30대	41	3.02	0.935				
		40대	25	3.24	1.012				
		50대 이상	11	2.82	1.250				
프라이버시침해 사례	신분	교사	65	2.22	0.944	1.588	0.206		
		사서	36	2.11	0.950				
		학생	226	1.97	1.052				
	연령	중학생	54	2.13	1.029	1.048	0.390		
		고등학생	172	1.92	1.056				
		20대	24	2.13	1.227				
		30대	41	2.24	0.860				
		40대	25	2.08	0.759				
		50대 이상	11	2.27	1.009				
	프라이버시 보호 관심 정도	신분	교사	65	2.94	0.846	24.197	0.000	a,b>c
			사서	36	3.22	0.898			
			학생	226	2.30	0.927			
연령		중학생	54	2.30	0.882	9.222	0.000	a,b<d,e	
		고등학생	172	2.30	0.944				
		20대	24	2.96	0.999				
		30대	41	3.10	0.889				
		40대	25	3.08	0.702				
		50대 이상	11	2.91	0.944				
프라이버시 문제의 심각성		신분	교사	65	2.55	0.791	1.281	0.279	
			사서	36	2.42	0.906			
			학생	226	2.36	0.884			
	연령	중학생	54	2.61	0.811	2.326	0.043	-	
		고등학생	172	2.28	0.894				
		20대	24	2.29	1.042				
		30대	41	2.63	0.698				
		40대	25	2.40	0.764				
		50대 이상	11	2.73	0.905				
	프라이버시 침해요소	신분	교사	65	2.63	0.858	1.646	0.194	
			사서	36	2.61	1.128			
			학생	226	2.41	0.986			
연령		중학생	54	2.52	0.885	0.908	0.476		
		고등학생	172	2.38	1.016				
		20대	24	2.63	1.245				
		30대	41	2.68	0.934				
		40대	25	2.52	0.823				
		50대 이상	11	2.64	0.674				

문항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표준편차	F	p	Scheffe
유출의 심각성	신분	교사	65	3.35	0.856	1.691	0.186	
		사서	36	3.53	0.941			
		학생	226	3.23	0.989			
	연령	중학생	54	3.19	0.973	1.121	0.349	
		고등학생	172	3.24	0.996			
		20대	24	3.17	0.917			
		30대	41	3.51	0.840			
		40대	25	3.56	0.917			
50대 이상	11	3.27	0.905					
본인 동의의 필요성	신분	교사	65	4.02	0.800	3.452	0.033	-
		사서	36	3.97	0.910			
		학생	226	3.69	1.046			
	연령	중학생	54	3.46	1.004	2.603	0.025	
		고등학생	172	3.76	1.052			
		20대	24	3.88	1.035			
		30대	41	4.10	0.700			
		40대	25	3.84	0.898			
50대 이상	11	4.27	0.647					

**p<0.01, *p<0.05

4.3 도서관 이용기록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도서관 이용기록들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4.3.1 도서관 이용기록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기록이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기록 중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는 '회원정보 기록'이 평균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CCTV 영상 기록'이 평균 2.86, '도서관 외주업체와 개

인정보 공유'가 평균 2.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관 이용기록 중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책 추천 서비스 기록'으로 평균 2.1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예약자료 목록 기록' 평균 2.27, '희망도서 신청 기록' 과 '도서관 컴퓨터 모니터링과 통제소프트웨어'가 평균 2.30 순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4.3.2 학교도서관 이용기록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도서관 이용기록들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집단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인식차이 검증은 위해서 Anova분석 및 Scheffe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신분에 따른 차이검증 분석 결과를 보면

〈표 24〉 도서관 이용 기록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 인식

항목	매우 적다		적다		보통이다		많다		매우 많다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회원정보 기록	53	16.2	77	23.5	89	27.2	68	20.8	40	12.2	2.89	1.255
로그인 기록	88	26.9	89	27.2	88	26.9	49	15.0	13	4.0	2.42	1.151
대출반납기록	88	26.9	83	25.4	87	26.6	56	17.1	13	4.0	2.46	1.171
연체 기록	91	27.8	77	23.5	91	27.8	46	14.1	22	6.7	2.48	1.223
열람도서목록 기록	99	30.3	88	26.9	87	26.6	38	11.6	15	4.6	2.33	1.157
예약자료 목록 기록	106	32.4	86	26.3	86	26.3	39	11.9	10	3.1	2.27	1.127
자료 변상 기록	95	29.1	90	27.5	100	30.6	30	9.2	12	3.7	2.31	1.096
희망도서 신청 기록	107	32.7	78	23.9	89	27.2	42	12.8	11	3.4	2.30	1.153
도서관 컴퓨터 이용기록	101	30.9	78	23.9	93	28.4	44	13.5	11	3.4	2.35	1.148
독후 활동 기록	85	26.0	87	26.6	85	26.0	47	14.4	23	7.0	2.50	1.218
독서 토론방 기록	85	26.0	91	27.8	92	28.1	37	11.3	22	6.7	2.45	1.184
포토폴리오 출력 기록	94	28.7	85	26.0	86	26.3	45	13.8	17	5.2	2.41	1.186
나의 문집 및 가족 문집 기록	95	29.1	67	20.5	82	25.1	52	15.9	31	9.5	2.56	1.311
책 추천 서비스 기록	119	36.4	83	25.4	93	28.4	24	7.3	8	2.4	2.14	1.070
도서관 데이터 백업자료	106	32.4	79	24.2	83	25.4	49	15.0	10	3.1	2.32	1.163
도서관 컴퓨터 모니터링과 통제소프트웨어	110	33.6	74	22.6	91	27.8	39	11.9	13	4.0	2.30	1.168
컴퓨터 모니터가 보이는 개방 된 공간	75	22.9	76	23.2	90	27.5	60	18.3	26	8.0	2.65	1.239
도서관 외주업체와 개인정보 공유	77	23.5	62	19.0	83	25.4	58	17.7	47	14.4	2.80	1.361
CCTV 영상 기록	75	22.9	54	16.5	94	28.7	50	15.3	54	16.5	2.86	1.372
Q & A 게시판 내 게시물	97	29.7	69	21.1	98	30.0	40	12.2	23	7.0	2.46	1.230

회원정보기록에 대한 분석에서는 F값이 9.648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는 교사집단과 학생집단간 회원정보기록에 대해 인식차이를 보여주었다. 연체기록에 대한 분석 차이검증에서는 F값 4.712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는 교사집단과 학생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예약자료 목록에 대한 분석에서는 F값 5.533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는 교사집단과 학생집단간 예약자료 목록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도서관데이터 백업자료에 대한 분석의 결과 F값 3.530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인 Scheffe에서는 교사집단과 학생집단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외주업체와 정보공유에 대한 분석에서는 F값 12.822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는 교

사집단과 학생집단간 정보공유에 대해 인식차이를 보여주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원정보기록에 대한 분석의 결과 F값이 4.976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는 중학생집단과 30대 집단간 회원정보기록에 대해 차이를 보여주었다. 예약자료 목록에 대한 분석에서는 F값 2.756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는 집단간 차이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외주업체와의 정보공유에 대한 분석에서는 F값이 5.688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는 중학생집단과 30대, 40대 집단간 외주업체와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여주었다(〈표 25〉 참조).

〈표 25〉 개인적인 배경에 따른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인식차이 검증

문항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표준편차	F	p	Scheffe
회원정보기록	신분	교사	65	3.48	1.091	9.648	0.000	a>c
		사서	36	2.92	1.422			
		학생	226	2.72	1.225			
	연령	중학생	54	2.35	1.012	4.976	0.000	a<d
		고등학생	172	2.84	1.265			
		20대	24	3.00	1.285			
		30대	41	3.54	1.306			
40대		25	3.08	1.152				
50대 이상	11	3.36	1.027					
로그인기록	신분	교사	65	2.63	1.167	2.597	0.076	
		사서	36	2.75	1.228			
		학생	226	2.36	1.155			
	연령	중학생	54	2.41	1.108	0.851	0.515	
		고등학생	172	2.37	1.175			
		20대	24	2.17	0.917			
		30대	41	2.68	1.312			
40대		25	2.52	1.085				
50대 이상	11	2.64	0.924					
대출반납기록	신분	교사	65	2.63	1.167	2.597	0.076	
		사서	36	2.75	1.228			
		학생	226	2.36	1.155			
	연령	중학생	54	2.37	1.138	1.241	0.290	
		고등학생	172	2.36	1.164			
		20대	24	2.67	1.308			
		30대	41	2.56	1.205			
40대		25	2.72	1.137				
50대 이상	11	3.00	1.000					
연체기록	신분	교사	65	2.88	1.218	4.712	0.010	a>c
		사서	36	2.56	1.206			
		학생	226	2.36	1.207			
	연령	중학생	54	2.26	1.136	1.671	0.141	
		고등학생	172	2.39	1.230			
		20대	24	2.75	1.189			
		30대	41	2.73	1.225			
40대		25	2.76	1.363				
50대 이상	11	2.91	1.044					
열람도서목록	신분	교사	65	2.55	1.173	2.253	0.107	
		사서	36	2.50	1.298			
		학생	226	2.24	1.123			

문항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표준편차	F	p	Scheffe
열람도서목록	연령	중학생	54	2.07	0.968	1.384	0.230	
		고등학생	172	2.30	1.164			
		20대	24	2.67	1.308			
		30대	41	2.46	1.142			
		40대	25	2.44	1.294			
		50대 이상	11	2.73	1.191			
예약자료목록	신분	교사	65	2.55	1.173	5.533	0.004	a>c
		사서	36	2.61	1.248			
		학생	226	2.13	1.071			
	연령	중학생	54	1.93	0.929	2.756	0.019	-
		고등학생	172	2.20	1.106			
		20대	24	2.67	1.341			
		30대	41	2.51	1.207			
		40대	25	2.56	1.121			
		50대 이상	11	2.64	1.120			
자료변상기록	신분	교사	65	2.60	1.072	2.924	0.055	
		사서	36	2.28	1.210			
		학생	226	2.23	1.075			
	연령	중학생	54	2.07	0.968	1.207	0.305	
		고등학생	172	2.28	1.104			
		20대	24	2.50	1.251			
		30대	41	2.56	1.184			
		40대	25	2.32	1.069			
		50대 이상	11	2.55	.820			
희망도서신청	신분	교사	65	2.49	1.062	1.509	0.223	
		사서	36	2.42	1.317			
		학생	226	2.23	1.147			
	연령	중학생	54	1.94	1.054	1.559	0.171	
		고등학생	172	2.32	1.163			
		20대	24	2.58	1.283			
		30대	41	2.46	1.164			
		40대	25	2.36	1.075			
		50대 이상	11	2.45	1.128			
도서관컴퓨터이용	신분	교사	65	2.54	1.105	1.152	0.317	
		사서	36	2.28	1.279			
		학생	226	2.30	1.138			
	연령	중학생	54	2.17	1.129	1.356	0.241	
		고등학생	172	2.34	1.141			
		20대	24	2.54	1.215			
		30대	41	2.29	1.167			
		40대	25	2.32	1.145			
		50대 이상	11	3.09	1.044			

문항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표준편차	F	p	Scheffe
독후활동기록	신분	교사	65	2.55	1.160	0.148	0.862	
		사서	36	2.42	1.296			
		학생	226	2.50	1.227			
	연령	중학생	54	2.19	1.029	1.026	0.402	
		고등학생	172	2.59	1.269			
		20대	24	2.54	1.179			
		30대	41	2.44	1.246			
		40대	25	2.48	1.295			
50대 이상	11	2.73	1.009					
독서토론방기록	신분	교사	65	2.62	1.168	1.008	0.366	
		사서	36	2.53	1.253			
		학생	226	2.39	1.177			
	연령	중학생	54	2.20	1.035	1.033	0.398	
		고등학생	172	2.45	1.215			
		20대	24	2.63	1.173			
		30대	41	2.44	1.163			
		40대	25	2.64	1.350			
50대 이상	11	2.91	1.044					
포트폴리오출력	신분	교사	65	2.52	1.133	0.888	0.412	
		사서	36	2.19	1.283			
		학생	226	2.41	1.186			
	연령	중학생	54	2.04	0.951	1.656	0.145	
		고등학생	172	2.52	1.230			
		20대	24	2.38	1.135			
		30대	41	2.29	1.230			
		40대	25	2.48	1.262			
50대 이상	11	2.73	1.104					
나의문집	신분	교사	65	2.78	1.256	1.212	0.299	
		사서	36	2.44	1.501			
		학생	226	2.52	1.293			
	연령	중학생	54	2.19	1.100	1.257	0.283	
		고등학생	172	2.62	1.334			
		20대	24	2.88	1.296			
		30대	41	2.59	1.378			
		40대	25	2.60	1.500			
50대 이상	11	2.64	1.120					
책추천서비스	신분	교사	65	2.25	1.000	0.442	0.643	
		사서	36	2.17	1.183			
		학생	226	2.11	1.074			
	연령	중학생	54	1.96	0.931	0.883	0.492	
		고등학생	172	2.15	1.114			
		20대	24	2.42	1.176			
		30대	41	2.05	1.024			
		40대	25	2.20	1.155			
50대 이상	11	2.45	0.688					

문항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표준편차	F	p	Scheffe
도서관데이터 백업자료	신분	교사	65	2.66	1.108	3.530	0.030	a>c
		사서	36	2.25	1.317			
		학생	226	2.23	1.140			
	연령	중학생	54	1.96	0.990	1.750	0.123	
		고등학생	172	2.32	1.173			
		20대	24	2.46	1.179			
		30대	41	2.56	1.285			
		40대	25	2.40	1.225			
50대 이상	11	2.73	0.905					
도서관컴퓨터 모니터링	신분	교사	65	2.60	1.058	2.725	0.067	
		사서	36	2.19	1.238			
		학생	226	2.23	1.178			
	연령	중학생	54	2.04	1.009	1.149	0.334	
		고등학생	172	2.29	1.222			
		20대	24	2.42	1.100			
		30대	41	2.41	1.140			
		40대	25	2.40	1.190			
50대 이상	11	2.82	1.168					
컴퓨터모니터 개방공간	신분	교사	65	2.92	1.203	2.058	0.129	
		사서	36	2.67	1.287			
		학생	226	2.57	1.235			
	연령	중학생	54	2.48	1.161	0.878	0.496	
		고등학생	172	2.60	1.260			
		20대	24	2.83	1.239			
		30대	41	2.90	1.375			
		40대	25	2.64	1.150			
50대 이상	11	3.00	0.894					
외주업체와정보공유	신분	교사	65	3.46	1.288	12.822	0.000	a>c
		사서	36	3.11	1.389			
		학생	226	2.57	1.309			
	연령	중학생	54	2.28	1.036	5.688	0.000	a<d,e
		고등학생	172	2.66	1.374			
		20대	24	3.25	1.225			
		30대	41	3.24	1.529			
		40대	25	3.44	1.193			
50대 이상	11	3.64	1.120					
CCTV기록	신분	교사	65	3.06	1.333	0.887	0.413	
		사서	36	2.83	1.363			
		학생	226	2.81	1.385			
	연령	중학생	54	2.39	1.123	1.764	0.120	
		고등학생	172	2.94	1.435			
		20대	24	2.92	1.248			
		30대	41	2.98	1.294			
		40대	25	2.88	1.590			
50대 이상	11	3.36	1.206					

문항	구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표준편차	F	p	Scheffe
Q&A 게시판의 게시물	신분	교사	65	2.68	1.200	1.301	0.274	
		사서	36	2.44	1.297			
		학생	226	2.40	1.226			
	연령	중학생	54	2.24	1.115	0.850	0.515	
		고등학생	172	2.45	1.258			
		20대	24	2.71	1.301			
		30대	41	2.49	1.306			
		40대	25	2.52	1.194			
	50대 이상	11	2.91	0.944				

**p<0.01, *p<0.05

한편, 교사, 사서, 학생 등 신분별 인식차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먼저, 교사의 경우 회원정보기록이 도서관 이용기록 중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라 응답하였고(평균 3.48), 다음으로 외주업체와 정보공유 3.46, CCTV 기록 3.06 순으로 나타났다. 사서의 경우 도서관 이용기록 중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외주업체와 정보공유라고 하였고(평균 3.11), 다음으로 회원정보기록 2.92, CCTV 기록 평균 2.83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도서관 이용기록 중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 항목은 CCTV 기록으로 평균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회원정보기록 2.72, 나의 문집 평균 2.52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집단간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회원정보기록(p=0.000), 연체 기록(p=0.010), 예약자료목록(p=0.004), 도서관데이터백업자료(p=0.030), 외주업체와 정보공유(p=0.000) 등이다.

4.4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교육과 안내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 및 회원증 발급 시의 안내 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4.4.1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경험

사서나 교사, 학생들이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프라이버시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83.77%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6.23%만이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신분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학생이 87.6%의 가장 높은 비율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26> 참조).

4.4.2 회원증 발급 시 '개인정보 방침' 관련하여 도서관 담당자의 안내 여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을 때 도서관 담당자로부터 개인정보 방침과 관련하여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

〈표 26〉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경험

세부항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사	11	16.9	54	83.1
사서	7	19.4	29	80.6
학생	28	12.4	198	87.6
합/평균	46	16.23	281	83.77

〈표 27〉 회원증 발급시 개인정보와 관련한 안내 여부

세부항목	안내 한 적이 있다		안내 받은 적이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사	24	36.9	41	63.1
사서	15	41.7	21	58.3
학생	59	26.1	167	73.9
합/평균	98	34.90	229	65.10

으며, 65.1%의 응답자가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특히 학생의 73.9%가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표 27〉 참조).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 교사, 사서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도서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적 개선,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교육이나 발전을 위한 향후 연구를 제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생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률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있고, 미국에서는 「가족교육권과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프라이버시법(privacy)」, 「버몬트도서관 기록법」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수집, 제공, 이용, 안전관리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도서관과 관련된 법으로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도서관법」에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조항이 있으나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수집, 제공, 이용,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의 실제적인 운영방침이나 독서교육, 사서교사, 시설·자료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인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대한 인

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이며, 이 중에서 학교도서관이 있는 중·고등학교 207개를 선정하였다. 그 중 강화군이나 옹진군에 속하거나 주로 섬 지역이어서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20개(중·고등학교 각각 10개) 학교를 제외한 총 187개의 중·고등학교가 표집 대상이 되었다. 187개 학교 중 출입허가를 받은 30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방문허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교문으로 나오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설문 응답하겠다고 한 학생들에 한해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총 32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27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100%). 설문분석 도구로는 SPSS 21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의 인식,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기록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38.5%의 응답자가 약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28.1%가 서비스 후 즉각 폐기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 이용기록은 최대 6개월에서 서비스 후 즉각 폐기가 적당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느끼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1.6%의 응

답자들은 심각하다고 하였고, 18.4%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였다. 집단간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 3자가 도서관 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8.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10.4%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신분, 연령, 근무경력 모두에서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학교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특히 학생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관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의 모든 정보는 기록되고 보관되고 여러 사람 및 기관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독서기록의 입시에의 활용은 학생의 지적자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정책당국은 현재 나이스를 통해 통합관리되고 있는 각종 학생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그 활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학생개인정보 수집목적 이외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교사 및 사서들은 학생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며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인격체임을 인정하며,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지적추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사서의 경우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관련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개인정보 관리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5.2 제언

연구자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 관계자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알도록,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 제

시를 통해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 조항이 정비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프라이버시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전국의 학교도서관 이용자 대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국가 수준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전. 1999. 학교 범규상 기본적 인권 보장 제도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11): 27-62.
- 국가인권위원회. 200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분야』. 제2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서경환. 1990. 『학생의 권리: 미국헌법과 한국헌법의 비교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법학과.
- 연합뉴스. 2005.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 [online]. [cited 2015.5.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66669>>.
- 이수광. 2000.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장순선, 이옥화. 2010. 나이스의 학생개인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식조사. 『한국정보교육학회』, 14(2): 261-271.
- 정형승. 2004.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권리간의 상충과 조화』.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 조규범. 2005. 미국의 프라이버시 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7(3): 75-113.

- 한겨레. 2005. 인권위 “초등생 일기검사 인권침해” 찬반 후끈 [online]. [cited 2015.5.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106726>>.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독서교육지원 업무관리 매뉴얼』.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한국전산원. 2004.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서울: 한국전산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online]. [cited 2015.6.1].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0781>.
- 한승희. 2001. 정보화사회에서의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교육행정학연구』, 19(1): 125-147.
- 헤럴드 경제. 2014. 이용세 변화사의 법률 특,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되어야 [online]. [cited 2015.4.2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16000446&md=20141016102121_BL>.
- Adams, Helen R. 2011. “The Privacy Problem.” *School Library Journal*, 57(4): 34-37.
- Adams, Helen R. 2013. *Protecting Intellectual Freedom and Privacy in your School Library*. California: Libraries Unlimited.
- Adams, Helen R. 2014. “Practical Ideas: Protecting Students’ Privacy in Your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Monthly*, 30(6): 29-30.
- Hildebrand, Janet. 1991. “Is Privacy Reserved for Adults?.” *School Library Journal*, 91(37): 21-25.
- Kim, Dong-Seok and Younghee Noh. 2014. “A Study of Public Library Patrons’ Understanding of Library Records and Data Privacy.”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4(1): 53-78.
- Minkel, Walter. 2002. “Fingerprinting Kids Unpopular in U.S.” *School Library Journal*, 48(9): 22.
- Minkel, Walter. 2004. “AK to Nix Kids’ Privacy Rights.” *School Library Journal*, 50(4): 22-22.
- Noh, Younghee. 2014. “Digital Library User Privacy: Changing Librarian Viewpoints through Education.” *Library Hi Tech*, 32(2): 300-317.
- Riehl, Donna. 2006. “Students’ Privacy Rights in School Libraries: Balancing Principles, Ethics and Practices.” *School Libraries in Canada*, 26(2): 32-4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 Culture* [online]. [cited 2015.6.1].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0781〉.
- Cho, Kyubeom. 2005. "Statutory Development of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17(3): 75-113.
- Hankyoreh. 2005. Human Rights Commission "Youth Diary inspec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pros and contras [online]. [cited 2015.5.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106726>〉.
- Han Seung-hee. 2001. "The student's privacy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Korea Education Administration Society*, 19(1): 125-147.
- Herald Business. 2014. Talk of Lee Yieungse Lawyer. More safe and reliable information society should be subject to further strength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nforcement [online]. [cited 2015.4.2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16000446&md=20141016102121_BL〉.
- Jang, Soonsum and Okhwa Lee. 2010. "The Development of Policy toward the Students' Access to Their Own Information on NEIS." *KAIE*, 14(2): 261-271.
- Jung, Hyun-Seung. 2004. *Conflicts and Harmonies between Educational Rights*. Ph. D.,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03. *Research on the Libraries and Reading Promotion Act*.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1. *Step Manual for Reading Education Support*. Seoul: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Ko, Jeon. 1999. "School regulations on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 institutions and challenges."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11): 27-62.
- Lee, Soo-Kwang. 2000. *The New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and Extending Student's Rights*. Ph. D., Graduate School of Kang Won National University, Major of Education.
-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2004. *Summary and Analysis of Key Foreign Privacy Laws*. Seoul: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7. *Decision Casebook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policy area*. vol 2.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Seo Kyoung-hwan. 1990. *The Rights of Students: Comparative Legal Study between Korean & American Constitutio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of Law.

Yonhapnews, 2005. Inspection about Elementary Students' Diary, Human Rights Violations.
[online]. [cited 2015.5.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66669>>.